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08024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redacted]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1)]

변 론 종 결 2019. 3. 21.

판 결 선 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24.자 재산세 2,370,337,200원의 부과처분 중 2,346,294,738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245,117,060원의 부과처분 중 242,288,53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9. 5.자 재산세 2,244,178,070원의 부과처분 중

1) 소장에는 '유성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하여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2,221,921,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235,208,420원의 부과처분 중 232,589,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9. 22.자 재산세 1,736,855,550원의 부과처분 중 1,714,599,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93,879,070원의 부과처분 중 191,260,6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교육청과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번길 [redacted]유[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학교용지 11,5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12. 14.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납부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교육세	합계
[redacted]동 1045	2013년도	14,142,625	9,899,837	2,828,525	26,870,987
	2014년도	13,092,030	9,164,420	2,618,406	24,874,856
	2015년도	13,092,030	9,164,420	2,618,406	24,874,856

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이 과세시점 기준으로 1년 이상 당해 재산을 공용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사용하는 경우,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토지사용승낙일 기준으로 조세 및 공과금을 대한민국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이 당해 토지를 유료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07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부산고등법원이 2017. 4. 28. 항소를 기각(부산고등법원 2016누24458)하고, 대법원이 2017. 8. 24. 피고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7두46011)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redacted]교육청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어떠한 사용대가를 정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최종할부금납부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해당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매매대금완납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 없이 해석에 맡겨져 있었던 점, ② 위에서 본 대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원 2017두46011 판결이 선고되기 전 안전행정부는 매매대금완납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피고 또한 이러한 해석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온 점, ③ 이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것에 기존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더하여,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가 추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동희

판사 정문식

판사 함현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29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끝.